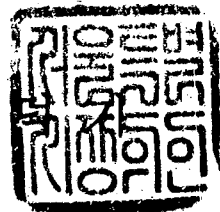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8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



위임전결
규정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

주제	11.2.12/1	19
담당자	김민준	홍
처	기	8

1.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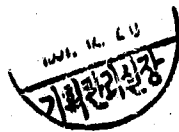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결정권자를 규정한 서울특별시사무전결처리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을 폐지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3 / 전송 731-6309 /
 처리부서 : 시정개발담당관(시정 본관 4층) 담당 : 오 세 랑

문서번호 시정 12452-1306
 시행일자 1997. 12. 20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선	결	법무담당관 3	지	시	
접	일자 시간	1997. 12. 20. :	결	재	법무담당관
수	번호	14450	공	람	
	처리과				
	담당자	김정주 10/10			

제목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 제출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을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 1부. 끝.

시 정 개 발 담 당 관 오 세 랑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3 / 전송 731-6309 /
 처리부서 : 시정개발담당관(시청 본관 4층) 담당 : 오 세 탕

문서번호 시정 11150-1306

시행일자 1997. 12.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 결	12/10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실사필	
시정개발담당관		
제도개선계장	기안 / 오세탕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

시장“훈령”으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을 “규칙”으로 재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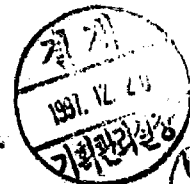
(제 2 안)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 제출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을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 1부. 끝.



시정개발담당관